

# 2021년 4월 17일 교정직 교정학개론

박문각 남부고시학원 교정학 이준

## <총평과 조언>

전체적으로 출제 경향은 예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교정관계법령”을 기준으로 출제된 문제가 16문제였으며, 판례문제가 1문제, 이론문제가 3문제로 구성되어 출제 되었습니다. 예년과 달리 교정학 영역보다 형사정책 영역의 출제가 많았다는게 이례적인 부분이며, 소년법 파트가 3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법, 치료감호법, 성충동약물치료법, 전자장치부착법, 범죄피해자구조법등 다양한 영역에서 출제하며, “교정관계법령”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출제하였습니다. 판례문제는 매우 어렵게 출제된 형태로 형법, 형사소송법 관련 내용으로, 교정학만을 공부한 수험생으로서 많은 어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또한, 전체 범위에서 다양하게 출제하다 보니 체감 난이도상 매우 어렵게 느낀 수험생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문제가 “교정관계법령”을 기준으로, “기출유형”의 문제 형태로 만들어 출제되었기에 학습에 충실히 임한 수험생님은 무난한 점수가 나왔으리라 예상됩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수험생활이 녹록치 않았던 지난 1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수고 많았으며, 좋은 결과가 나오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단원별 출제비중 ★

영역	출제 문항수
교정학	9 문제
형사정책	11 문제
“교정관계법령” 기준 출제문제	16 문제
난이도	
上	2
中	5
下	15

<문제와 해설>

책형 : ㉠

1.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 ②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 ③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과 장기 보호관찰 처분 시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 ④ 수강명령은 200시간을, 사회봉사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사건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 ②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소년법 제32조 제4항).
- ③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과 장기 보호관찰의 처분을 할 때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소년법 제32조의2 제2항).
- ④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사건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33조 제4항).

2.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 ②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중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치료명령의 집행 중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에는 치료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 ④ 치료기간은 연장될 수 있지만, 종전의 치료기간을 합산하여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 ②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중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성충동약물치료법 제15조 제2항).

3. 범죄와 생물학적 특성 연구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덕데일(Dugdale)은 범죄는 유전의 결과라는 견해를 밝힌 대표적인 학자이다.
- ② 랑게(Lange)는 일란성쌍생아가 이란성쌍생아보다 유사한 행동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 ③ 달가드(Dalgaard)와 크링그렌(Kringle)은 쌍생아 연구에서 환경적 요인이 고려될 때도 유전적 요인의 중요성은 변함없다고 하였다.
- ④ 허칭스(Hutchings)와 매드닉(Mednick)은 입양아 연구에서 양부모보다 생부모의 범죄성이 아이의 범죄성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정답 ③

해설

달가드와 크링그렌의 연구는 쌍둥이 연구에서 유전적 요인 이외에 환경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연구한 경우이며, 그들은 139쌍의 노르웨이 남자쌍둥이를 대상으로 일치율을 연구하여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 범죄일치율은 25.8%이고 이란성 쌍둥이의 경우는 14.9%로 일란성의 일치율이 다소 높았다. 일란성 쌍둥이들이 다소 높은 범죄 일치율을 보인 것을 유전적 요인이 아닌 양육과정상의 유사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실제 양육과정별로 분석을 하였을 때에는 일란성 쌍생아의 일치율은 이란성 쌍생아의 일치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얻은 결과는 “범죄발생에 있어 유전적 요소의 중요성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4. 「수형자 등 호송규정」상 호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호송자가 도주한 때에 서류와 금품은 수송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 ②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간의 호송은 교도관이 행한다.
- ③ 송치 중의 영치금품을 호송관에게 탁송한 때에는 호송관서에 보관책임이 있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송관서에 보관책임이 있다.
- ④ 호송관의 여비나 피호송자의 호송비용은 호송관서가 부담하나, 피호송자를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에 수감하게 한 때에는 그 비용은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가 부담한다.

정답 ①

해설

\* 수형자 등 호송규정 제 10조 제 1항(피호송자의 도주 등)

호송자가 도주한 때에는 호송관은 즉시 그 지방 및 인근 경찰관서와 호송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호송관서는 관할 지방경찰청, 사건소관 검찰청, 호송을 명령한 관서, 발송관서 및 수송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서류와 금품은 발송관서에 반환하여야 한다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수용자의 관리·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도소에 교정자문위원회를 둔다.
- ② 교정자문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 ③ 교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나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교정자문위원회 위원 중 4명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정답 ④

해설

- ① 수용자의 관리·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에 교정자문위원회를 둔다(형집행법 제129조 제1항).
- ② 교정자문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지방교정청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형집행법 제129조 제2항).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67조 제2항).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용자가 징벌이 집행 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6개월 내에 다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벌(경고는 제외)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 ②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 ③ 징벌위원회는 징벌을 의결하는 때에 행위의 동기 및 정황, 교정성적, নিু우치는 정도 등 그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 ④ 징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된다.

정답 ②

해설

- 형집행법 제 110조 제 1항 (징벌대상자 조사)
- ②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1.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7. 형의 집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사건으로 외국법원에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미결구금일수도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경우로 보아 국내법원에서 선고된 유죄판결의 형에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하여야 한다.
- ② 처단형은 선고형의 최종적인 기준이 되므로 그 범위는 법률에 따라서 엄격하게 정하여야 하고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형법」 제56조에서 열거하는 가중,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성질의 감경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 ③ 판결 주문에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경우라도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그 본형이 실행이든 집행 유예가 부가된 형이든 불문하고 그 산입된 미결구금일수는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④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정답①

해설

- [1]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규정인 형법 제7조의 취지 / 형법 제7조에서 정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의 의미 및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된 사람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와 그 미결구금 기간이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미결구금일수를 형법 제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가 국내에서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은 형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1] [다수의견] (가)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우리나라 형법법규에 따라 다시 처벌받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기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란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하여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을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2021년 4월 17일 교정직 교정학개론

박문각 남부고시학원 교정학 이준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었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73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미결구금은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이어서 형의 집행은 아니지만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점이 자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형법 제57조 제1항은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미결구금일수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기까지의 미결구금은, 국내에서의 형벌권 행사가 외국에서의 형사절차와는 별개의 것인 만큼 우리나라 형법규에 따른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이루어진 강제처분으로 볼 수 없고, 유죄판결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해당 국가의 형사보상제도에 따라 구금 기간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받음으로써 구제받을 성질의 것에 불과하다. 또한 형사절차에서 미결구금이 이루어지는 목적, 미결구금의 집행 방법 및 피구금자에 대한 처우, 미결구금에 대한 법률적 취급 등이 국가별로 다양하여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으로 인해 피고인이 받는 신체적 자유 박탈에 따른 불이익의 양상과 정도를 국내에서의 미결구금이나 형의 집행과 효과 면에서 서로 같거나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외국에서 이루어진 미결구금을 형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된 '본형에 당원히 산입되는 미결구금'과 같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미결구금이 자유 박탈이라는 효과 면에서 형의 집행과 일부 유사하다는 점만을 근거로,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것이 아니라 단지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미결구금일수를 형법 제73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가 국내에서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는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다) 한편 양형의 조건에 관하여 규정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은 널리 형의 양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하고, 이는 열거적인 것이 아니라 예시적인 것이다. 피고인이 외국에서 기소되어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이후 다시 그 행위로 국내에서 처벌받는 경우, 공판 과정에서 외국에서의 미결구금 사실이 밝혀진다면,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들과 함께 그 미결구금의 원인이 된 사실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정도, 미결구금 기간, 해당 국가에서 이루어진 미결구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 등을 적용하고, 나아가 이를 양형의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참작하여 최종의 선고형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양형을 통해 피고인의 미결구금에 따른 불이익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형법 제73조를 유추적용하여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을 확정된 형의 집행 단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산입한다면 이는 위 미결구금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형을 정함을 전제로 하므로, 오히려 위와 같이 미결구금을 양형 단계에서 반영하여 그에 상응한 적절한 형으로 선고하는 것에 비하여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 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무부장관은 이송승인에 관한 권한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소장은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에 이송하는 경우에 의무관으로부터 수용자가 건강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으면 이송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지방교정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소장은 수용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 ④ 수용자가 이송 중에 징벌대상 행위를 하거나 다른 교정시설에서 징벌대상 행위를 한 사실이 이송된 후에 발각된 경우에는 그 수용자를 인수한 지방교정청장이 징벌을 부과한다.

### 정답 ③

해설

- ① 법무부장관은 이송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형집행법 제20조 제2항).
- ② 소장은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에 이송하는 경우에 의무관으로부터 수용자가 건강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으면 이송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이송받을 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형집행법 시행령 제23조).
- ④ 수용자가 이송 중에 징벌대상 행위를 하거나 다른 교정시설에서 징벌대상 행위를 한 사실이 이송된 후에 발각된 경우에는 그 수용자를 인수한 소장이 징벌을 부과한다 (형집행법 시행령 제136조).

##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부 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행자의 선정기준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19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
- ㄴ. 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
- ㄷ. 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할 것
- ㄹ. 가족·친지 또는 교정위원 등과 접견·편지수수·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
- ㅁ.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직업훈련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

- ① ㄴ, ㄹ
- ② ㄱ, ㄷ, ㅁ
- ③ ㄴ, ㄹ, ㅁ
- ④ ㄱ, ㄴ, ㄹ, ㅁ

### 정답 ①

해설

- \*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 120조 (선정기준)
  - ①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수행자 중에서 선정한다.
    - 1. 18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
    - 2. 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
    - 3.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에 해당할 것
    - 4. 가족·친지 또는 법 제130조의 교정위원(이하 "교정위원"이라 한다) 등과 접견·편지수수·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
    - 5.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
  - ②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

# 2021년 4월 17일 교정직 교정학개론

박문각 남부고시학원 교정학 이준

는 수형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같은 항 제3호의 요건의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수형자도 포함한다)을 갖춘 수형자로서 집행할 형기가 10년 미만이거나 형기산일일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수형자 중에서 선정한다.

③ 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수형자 외의 수형자에 대하여도 외부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소장은 임신부인 수용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교도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양의 죽 등의 주식과 별도로 마련된 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소장은 소년수형자의 나이·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화통화 횟수를 늘릴 수 있으나 접견 횟수를 늘릴 수는 없다.
- ③ 소장은 외국인수용자가 질병 등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장이나 그 관원 또는 가족에게 이를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소장은 노인수용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목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도관, 자원봉사자 또는 다른 수용자로 하여금 목욕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정답 ④

해설

- ① 소장은 임신부인 수용자 및 유아의 양육을 허가받은 수용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를 포함한다. 이하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양의 죽 등의 주식과 별도로 마련된 부식을 지급할 수 있으며, 양육유아에 대하여는 분유 등의 대체식품을 지급할 수 있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42조).
- ②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나이·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및 전화통화 횟수를 늘릴 수 있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59조의4).
- ③ 소장은 외국인수용자가 질병 등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장이나 그 관원 또는 가족에게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59조).

## 11. 「소년법」상 소년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 ② 보호사건을 송치받은 소년부는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다른 관할 소년부에 이송할 수 있다.
- ③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 ④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정답 ①

해설

- ① 제4조 제1항 제2호(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및 제3호(우범소년)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소년법 제4조 제2항).

## 12. 범죄원인과 관련하여 실증주의 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페리(Ferri)는 범죄자의 통제 밖에 있는 힘이 범죄성의 원인이므로 범죄자에게 그들의 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 ② 범죄의 연구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추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 ③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적, 경제적으로 계산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자의적이고 불명확한 법률은 이러한 합리적 계산을 불가능하게 하여 범죄억제에 좋지 않다고 보았다.
- ④ 범죄는 개인의 의지에 의해 선택된 규범침해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분석가능한 개인적·사회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 하였다.

### 정답 ③

해설

- ③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적, 경제적으로 계산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자의적이고 불명확한 법률은 이러한 합리적 계산을 불가능하게 하여 범죄억제에 좋지 않다고 보았다.- 고전주의학과

### 고전주의 학파 주장 내용

- ① 자유의지론을 기초로, 범죄인과 비범죄인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본다.
- ② 자백을 위한 고문을 금지하고, 증거와 진술에 의해 재판해야 한다.
- ③ 책임에 따른 형벌을 부과하여야 하므로, 정기형을 주장하고 부정기형은 반대한다.
- ④ 형벌은 사회계약을 보전함에 정당성이 있고, 형벌의 목적은 일반예방에 있다.
- ⑤ 모든 인간은 잠재적 범죄자이다(통제이론에 영향).
- ⑥ 과도하게 잔혹한 형벌과 사형을 반대한다.
- ⑦ 범죄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이다(비결정론).
- ⑧ 법적 질서를 자유의사에 따른 합의의 산물로 보고 법에 금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를 모두 범죄로 규정하며, 범죄의 원인에 따라 책임소재를 가리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부과해야 한다.

13. 소년사범의 대표적 제도인 소년법원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년법원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형사처벌을 지양하며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교화개신과 재활철학을 이념으로 한다.
- ② 소년법원은 범죄소년은 물론이고 촉법소년, 우범소년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에 개입하여 비행의 조기발견 및 조기처우를 하고 있다.
- ③ 소년법원의 절차는 일반법원에 비해 비공식적이고 융통성이 있다.
- ④ 소년법원은 감별 또는 분류심사 기능과 절차 및 과정이 잘 조직되어 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정답 ④

해설

소년법원은 분류심사원에 위탁하여 소년에 대한 분류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소장은 수용자가 교도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는 때에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보호장비를 사용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다.
- ②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되,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7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소장은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가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④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①

\* 진정실 수용 요건 (형집행법 제 96조 제 1항)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제98조의 보호장비를 사용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진정실(일반 수용거실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방음설비 등을 갖춘 거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

- 1. 교정시설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 2. 교도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는 때

\* 보호실 수용 요건 (형집행법 제 95조 제 1항)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보호실(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거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

- 1.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
- 2.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때

③ 소장은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형집행법 제95조 제4항).

④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형집행법 제95조 제3항).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접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 ② 수용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접견할 수 있는 횟수는 월 4회이다.
- ③ 소장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
- ④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② 수용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접견할 수 있는 횟수는 사건 당 2회이다 (형집행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2항 제2호).

16. 범죄피해자 보호법령상 형사조정 대상 사건으로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 ① 피의자가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 ②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③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 ④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정답 ②

해설

\* 범죄피해자 구조법 제 41조(형사조정 회부)

- ① 검사는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 ②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 3.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다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갱생보호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갱생보호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③ 갱생보호는 갱생보호 대상자의 신청에 의한 갱생보호와 법원의 직권에 의한 갱생보호로 규정되어 있다.
- ④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설립한다.

정답 ③

해설

- ③ 갱생보호 대상자와 관계 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보호 신청을 할 수 있다(보호관찰법 제66조 제1항)

18. 다양한 형태로 출현하여 시행되고 있는 지역사회교정(사회내 처우)의 형태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출소자들에 대한 원조(advocacy)
- ② 지역사회 융합을 위한 재통합(reintegration)
- ③ 사회적 낙인문제 해소를 위한 전환제도(diversion)
- ④ 범죄자의 선별적 무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

정답 ④

해설

선별적 무력화란 소수 중누범자들을 선별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교정시설에 장기간 구금함으로써 범죄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회내 처우와는 관계 없으며 시설내처우에 해당된다.

1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법원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반드시 포함하여 부과해야 하는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은?

- ①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 ② 주거지역의 제한
- ③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 ④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정답 ③

해설

\* 전자장치부착법 제 9조의 2 (준수사항)

- ①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

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1.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2의2. 주거지역의 제한
- 3.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 4.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 5.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 6.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치료감호 대상자는 의사무능력이나 심신미약으로 인하여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징역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이다.
- ②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치료감호 대상자에 해당하는 심신장애인과 정신성적 장애인인 경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감호가 가중료되었을 때 시작되는 보호관찰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 ④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치료감호가 종료되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 치료감호법

- ① 치료감호대상자 제 2조 (치료감호대상자)

이 법에서 "치료감호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 1. 「형법」 제10조제1항(의사무능력인 심신상실자)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심신미약자)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 2.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毒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食飲)·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 3.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혹증(性的加虐症) 등 성적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
- ③ 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치료감호법 제32조 제2항).
- ④ 제32조 제1항 제1호(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중료되었을 때) 또는 제2호(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도록 법정대리인등에게 위탁되었을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기간이 끝나면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끝난다(치료감호법 제35조 제1항).